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통령 노무현** 인

2008년 1월3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 
건설교통부  
장관 이 용 섭

**●대통령령 제20585호**

**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21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5. 「외국인토지법」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**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,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통령 노무현** 인

2008년 1월3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 
해양수산부  
장관 강무현

**●대통령령 제20586호**

**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**